

그리 멀지 않은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승 렬*

올해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90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2,162천 명이었다. 이는 한국인 총인구수 43,390천 명의 5%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해는 2000년임을 생각해 볼 때, 고령화사회 진입을 10년 앞두고, 정부는 대비에 들어갔던 셈이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구성에 있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취업이 저조하며, 산업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 이 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2008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 개정 속에서 고령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 그리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10명 가운데 2명을 넘어선다는 초고령사회는 4년 뒤인 2025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을 실행하였다.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은 2006년 9월에 발표하여 2007~11년 5년간 실행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2년 넘게 준비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이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사후 대책 수립이었다고 한다면, 제2차 기본계획(2012~16)은 고령사회 진입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년제도 개선으로 60세 정년 지도를 강화하면서 60세 정년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실제로 2013년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정년 의무화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제3차 기본계획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립·실행되었다. 이 제3차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4차 기본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이번 호 특집은 제4차 기본계획이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sy@kli.re.kr).

고려하여야 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세 논문 모두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노동이력(work history)을 추적하면서 소득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세 논문은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에 편입되어 2022년이면 대부분 60세 이상이다. 특히 1961~64년생은 정년 60세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제4차 기본계획에서 어떻게든 해결하여야만 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 볼 수 있듯이 비근로소득이 보충되지 않는 노동시장 이탈은 빈곤 진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은 한 가지 고려 사항이 더 있다. 기본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8~74년생)의 상당수가 55세 이상 인구에 편입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68년생의 경우는 연금 수급연령이 64세이므로 이들도 소득 크레바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와 소득 크레바스 문제의 해결이 제4차 기본계획의 당면 과제이다. 재취업이나 점진적 은퇴 등도 소득 저하 흐름을 완화하는 대안임이 특집 논문에서 확인되듯이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호 특집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논의와 고민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해 본다. **KLI**